

正祖 親撰 『三禮手圈』의 편찬 의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Complication Intention of the *Samryesugwon*

윤 현 정 (Hyun Joung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4. 『三禮手圈』의 절록 분석 |
| 2. 『三禮手圈』의 編纂과 構成 | 5. 결 론 |
| 3. 三禮 존송의 배경 | |

초 록

본 연구는 정조가 초본 『사부수권』을 편찬한 목적이 선본 시리즈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편찬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한 뒤, 실제 절록 양상을 정리하여 『삼례수권』의 편찬 의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례수권』은 약 20일 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편찬되었으며, 특히 『예기수권』의 편찬의 경우 절록 과정이 다소 세밀하지 못하다. 둘째, 그 구성은 목차나 초록된 구절의 출처와 같은 정보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표기하여 절록된 구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례』, 『주례』, 『예기』세 문헌마다 강목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셋째, 정조는 삼례에 대해 『의례』와 『주례』를 존송하였으며, 『예기』에 대해서는 앞의 두 문헌보다 부차적인 문헌으로 수용하고 있다. 넷째, 정조 특유의 섬세한 절록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삼례 각 문헌마다 상이한 절록 규칙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study, *Samryesugwon* is compared with King Jeongjo's anthology because it is not clear why King Jeongjo made *Samryesugwon* from the Three Classics of Li in a same category but in two different text.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ard to find information of title because there is no table of contents on the *Samryesugwon*. Also, King Jeongjo considered and respected the *Yili* and *Zhouli* as the original Classics of Li, but not the *Liji*. Last, it turns out that there is the passive fixed pattern in the way of abridgment instead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Jeongjo's abridgment which was compiled before. This research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 figure out the reason why King Jeongjo compiled the *Samryesugwon* and what his perspective on the Three Classics of Li by textual analyzing as abridgment book.

키워드: 『三禮手圈』, 正祖, 『四部手圈』, 御撰書, 『儀禮』, 『周禮』, 『禮記』

Samryesugwon, king Jungio, *Sabusugwon*, king-edited book, *Yili*, *Zhouli*, *Liji*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강사(hyunjoungy@gmail.com / ISNI 0000 0004 9392 5212)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2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73-100,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07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조선후기 문화부흥을 일으킨 正祖(정조)가 개인 문집인 『弘齋全書(홍재전서)』를 위시하여 많은 문헌을 편찬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는 자신의 공부법으로 孔子(공자)의 ‘博文約禮(박문약례)’ 정신을 본받아 많은 양의 문헌을 접하고 그 요점만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체득하는 공부법인 抄錄(초록) 방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정조 친찬 문헌 중 중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편찬한 選本類(선본류)의 문헌이 다수 편간된 사실을 통해 규명된 바 있다(윤현정, 2019). 본 연구의 주제인 『三禮手圈(삼례수권)』 역시 정조의 공부법인 초록의 결과로서 편찬된 문헌으로, 經·史·子·集(경·사·자·집)의 四部(사부)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헌들에 대해 손수 批點(비점)과 圈點(권점)을 쳐 교정을 거쳐 편찬한 抄本(초본) 『四部手圈(사부수권)』 중 『儀禮(의례)』, 『周禮(주례)』, 『禮記(예기)』의 ‘三禮(삼례)’를 저본으로 삼아 일부 구절들을 초절하여 엮은 經部(경부) 초본에 해당한다.

『삼례수권』에 대한 종래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사부수권』의 일부로서 『삼례수권』을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연구로 2002년 규장각에서 영인한 『사부수권』의 해제(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와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판한 『藏書閣韓國本解題(장서각한국본해제)』(한국학중앙연구원, 2012)에 수록된 해제, 『사부수권』의 편찬과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핀 조동영의 논고(조동영, 2010), 『사부수권』의 편찬에 있어 洪就榮(홍취영)과 주고받은 교정 내용을 다룬 강순애의 논고(강순애, 2019)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사부수권』의 편찬 및 간행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삼례수권』을 언급한 것으로, 정조가 경서 중에서도 유독 ‘삼례’를 초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초본 『삼례수권』을 편찬한 의도를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조의 초본 『사부수권』이 경·사·자·집 각 주제의 문헌을 요약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에 편찬한 선본 문헌과 동일한 맥락으로 묶어 언급하거나 『사부수권』을 단순히 선본보다 한 단계 더 요약한 문헌으로 모호하게 설명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정조의 선본과 『사부수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부수권』의 일부인 『八家手圈(팔가수권)』, 『兩京手圈(양경수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필자의 선행 연구(윤현정, 2021; 2022)에 뒤이어 역시 『사부수권』의 일부인 『삼례수권』의 편찬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본 뒤, 삼례에 대한 정조의 관점을 분석하여 그 편찬 배경을 밝히고, 『삼례수권』의 원문에서 나타나는 절록 양상을 검토하여 정조가 『삼례수권』을 편찬한 의도를 파악하며, 나아가 정조 친찬 『사부수권』이 지니는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된 문헌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奎51 『사부수권』 중 1-3冊에 해당하는 『삼례수권』으로, 이와 같은 연구 범위의 제한은 본 연구의 목적이 『삼례수권』의 편찬 의도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연구(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에서 현존하는 필사본과 목판본 간에는 卷冊(권책) 구분을 제외한 원문 상의 주요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힌 데에 근거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례수권』의 편찬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戊午課程日表(무오과정일표)』를 통해 편찬 일자와 구체적인 절록 과정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논문과 서지해제를 교차 검토한 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필사본을 기준으로 문헌의 구성 방식을 서술한 후 절록된 구절의 原典(원전)이 되는 篇名(편명)을 표로 정리한다. 이때, 초본 『사부수권』이 가진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전에 편찬된 선본 문헌의 구성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겸하여 진행한다.

둘째, 『삼례수권』의 편찬 의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유학의 흐름에 있어 삼례의 정립 과정을 검토하고, 『의례』, 『주례』, 『예기』에 대한 정조의 관점을 추측한다. 이를 위해 예학 관련 기존 연구논문 및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弘齋全書(홍재전서)』 『經史講義(경사강의)』 등의 史料(사료) 중 삼례 각 문헌에 대한 정조의 언급을 일체 조사한다.

셋째, 『삼례수권』의 절록 양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전이 되는 글 중 절록된 구절을 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 『삼례수권』의 전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과 주로 절록된 내용을 정리한다. 이는 『삼례수권』이 특정 구절만을 절록하는 행위를 거쳐 편찬된 문헌인 초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절록 구절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살펴 편찬자의 기호와 편찬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추론하는 문헌 내적 분석 방법이다.

2. 『三禮手圈』의 編纂과 構成

2.1 편찬 과정

『삼례수권』 편찬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의 『무오과정일표』(〈그림 1〉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그림 1〉을 살펴보면 『삼례수권』은 정조 22년(1798) 6월 25일과 10월 1일, 3일에 『예기』, 『의례』 그리고 『주례』를 각기 살펴보고 범례를 정한 뒤, 10월 12일과 13일 양일 간 『의례』를 대상으로 비점을 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끝이어 14일과 15일, 17일, 18일에 권점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때, 『무오과정일표』에 작성되지 않은 16일에는 홍취영에게 『의례』 권점 작업이 완료된 부분을 보내 줄 테니 이를 검토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강순애, 2019).¹⁾ 다음 날인 10월 19일에는 『주례』 범례를 정하고 『예기』 批圈(비권)이 나흘간 진행되었고, 21일에는 『의례』와 『예기』 繕寫(선사) 작업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10월 22일에는 『주례』 비점 작업과 『예기』 校正(교정)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고, 다음 날에는 『주례』 비점 작업의 마무리와 『의례』의 교정이 진행되었으며, 24일에는 『의례수권』과 『예기수권』이 먼저 완성되어 초계문신들이 교준한 기록이 『내각일력』에도 남아있다.²⁾ 같은 날에 『주례』는 권점 작업이 시작되어 27일에 종료되었고 이후 세 문헌 모두 재차 교열을 거쳐 10월 29일, 최종 완성되었다. 『삼례수권』은 『사부수권』중에

1)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삼례수권』의 편찬에 대해 '정조 22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삼례수권』을 비권하고 10월 17일에 홍취영에게 발췌본 전체의 교정을 부탁하여 10월 24일 전에는 돌려받은 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계문신들에게 교준 및 서역을 집중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2) 『內閣日曆』正祖 22年 10月 24日 5번째 기사

“三禮手圈書役及較正, 抄啓文臣 洪秀晚, 李義甲, 宋知謙, 李勉昇, 金熙洛, 金履載, 金履永, 洪爽周, 別省記入宿.”

〈그림 1〉 『四部手圈課程日表』 中 「戊午課程日表」

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었으므로 10월 29일은 『사부수권』의 완성일이기도 하다. 즉, 『삼례수권』은 약 한 달 동안 총 20일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사부수권』의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批(비)’, ‘圈(권)’, ‘校(교)’의 단계를 거쳐 원전에 푸른색으로 비점을 찍고, 비점이 찍힌 부분을 대상으로 붉은색으로 권점을 친 뒤, 권점을 친 구절들 중 일부를 재차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선별된 구절을 교정하는 작업을 문헌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무오과정일표」를 통해 작업이 진행된 구체적인 편명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삼례수권』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부수권』에 포함된 다른 문헌들과 편찬 기간을 비교해보면 『팔가수권』은 60일, 『五子手圈(오자수권)』은 57일, 『양경수권』은 15일, 『陸稿手圈(육고수권)』은 10일이 소요되어, 『삼례수권』은 짧은 기간 내에 편찬이 완료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삼례수권』의 편찬은 『오자수권』의 편찬을 마무리하는 중에 『양경수권』의 편찬과 함께 진행되었고, 특히 『예기』의 비권 작업의 경우, 비점과

권점 두 단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진행되어 정조가 삼례 중에서 『예기』를 다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정조 22년(1798년) 10월 29일 편찬이 완료된 『사부수권』은 1800년 6월 28일 정조의 죽음으로 인해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가, 약 1년 뒤인 순조 1년(1801년) 7월, 『御定四部手圈(어정사부수권)』의 서명 및 25卷 12冊의 구성으로 개편되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때, 서명과 권책 구분이 달라진 것과 동시에, 卷首(권수)에 總目(총목)과 『御定四部手圈正宗大王御製詩(어정사부수권정종대왕어제시)』가 추가되었고 필사본 卷末(권말)에 수록되어 있던 발문들은 일괄 삭제되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현존 필사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필사본 간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교감을 거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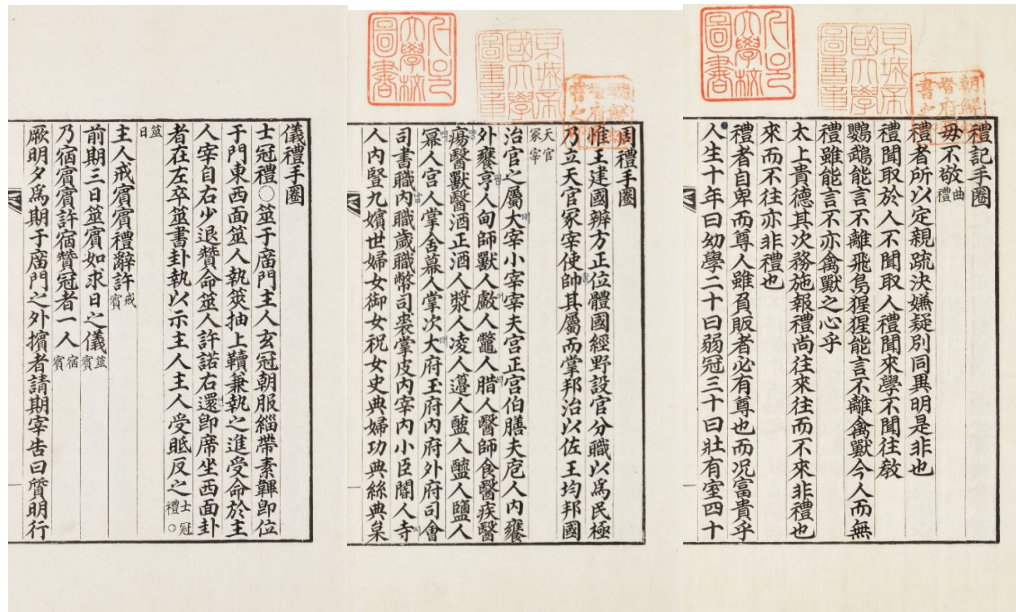
2.2 구성

본 연구에서 대상 저본으로 삼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奎51 『사부수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제는 ‘四部手圈’이며 13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周單邊(사주단변)에 半郭(반곽)의 크기는 24.4 × 17.1 cm이고, 有界에 10行20字이며 어미는 上花紋魚尾(상

화문어미)이다. 책 크기는 36.9 × 23.4 cm이다. 필사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글씨가 매우 해정하고 원문의 우측에 청색 먹으로 음을 표시하거나 구결토를 달아놓은 점을 통해 精稿本(정고본)으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그 중 1-3冊에 해당하는 『삼례수권』은 『의례』, 『주례』, 『예기』의 삼례를 대상으로 각 1冊씩 차례로 권별 구분 없이³⁾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8篇을 대상으로 1,101句가 수록되어 있다. 『삼례수권』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수에 『示三禮手圈謄本校正諸學士(시삼례수권등본교정제학사)』가 수록되어 있고, 목차 없이 卷首題(권수제)를 표시한 뒤 줄을 바꾸어 편명을 제시하고 줄바꿈 없이 白圈(백권) 아래로 곧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細註(세주) 없이 大字(대자)로 초록된 구절이 쓰여 있으며,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해당 구절의 출처를 小字雙行(소자쌍행)으로 표시하고 줄을 바꾸어 다음 구절을 신고 있다. 같은 출처 내에서 여러 구절이 초록된 경우에도 줄을 바꾸어 구분하였다. 이 때 『의례』의 경우, 출처 표시에 있어 ‘鄉射禮○戒賓’과 같이 같은 편 내에서도 각 절차를 표기하였고, 『주례』의 경우, 관직명을 추가적으로 표기하여 어느 부분에서 초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기』의 경우, 편명 이하에 소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 권말에는 김종수가 지은 발문이 한 칸 낮추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삼례수권』은 『사부수권』에 포함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奎51 기준임을 밝힌다. 『弘齋全書』 『羣書標記』에서는 “의례 2권, 주례 2권, 예기 2권(儀禮二卷, 周禮二卷, 禮記二卷.)”으로 표기하고 있고, 『正祖實錄』에서도 “30권으로 편찬한 다음 《사부수권》이라 이름하였다(彙成三十卷, 命名四部手圈)”라고 기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필사본 이후 30권의 권별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조에 완성된 필사본이 정조 사후 純祖朝에 목판으로 간행되는 과정과 현존 판본 분석 및 검토는 추후 연구로 미룬다.



〈그림 2〉 「儀禮手圈」, 「周禮手圈」, 「禮記手圈」 卷首題

된 다른 문헌과 동일하게 그 구성에 있어 초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목차를 생략하고 초록된 구절의 출처를 본문보다 소략하게 표기하여 절록된 구절들만을 강조하여 요약하여 양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둔 초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가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하였던 선본들에 비하면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간소하다. 이전의 선본 6종은 모든 권의 앞에 해당 권의 목차를 제시하고 그 양이 많고 항목 설정이 복잡한 경우 總目(총목)도 제시하였으며, 선별한 편마다 해당 편이 속해있는 상위 항목도 재차 표시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오경백편』의 경우, 慶尙監營 令吏(경상감영 영리)의 敦厚(돈후)한 글씨를 취하여 字本(자본)으로 삼아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경서에 대한 존숭 및 모범이 되는 서

체를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윤현정, 2015). 반면, 『사부수권』은 특정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절된 구절이 원전에서 어느 부분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아 독자를 의식하여 편찬한 문헌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면모가 없지 않다. 더구나 『사부수권』이 완성되기 전후로 간행과 관련된 언급이 전무하므로, 선행연구(조동영, 201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조가 문체반정의 일부로서 문인들에게 최소한의 글이라도 읽게 하고자 이 문헌을 널리 유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삼례수권』에 수록된 구절의 세부적인 편명과 그 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의례』에서는 「喪服(상복)」, 「士喪禮(사상례)」, 「既夕禮(기석례)」,

〈표 1〉 『三禮手圈』의 구성

書名	篇名	句節의 제목
〈儀禮手圈〉	士冠禮 (34句)	筮日, 戒賓, 筮賓, 宿賓, 爲期, 陳服器, 卽位, 迎賓, 始加, 再加, 三加, 醴冠者, 見于母, 字, 見兄弟姑娣, 見君見鄉大夫鄉先生, 醴賓, 醴, 戒賓辭, 宿賓辭, 加冠祝辭(3句), 醴辭, 醴辭(3句), 字辭, 履, 記用緇布冠之義, 記重適子之義, 記三代冠之同異, 記大夫以上冠禮(2句)
	士昏禮 (31句)	納采, 問名, 醴賓, 納吉, 納徵, 請期, 陳器饌, 親迎(3句), 夫婦入室, 食, 醴, 昏禮成, 婦見舅姑(2句), 醴婦, 婦饋舅姑, 饗婦, 禮送者, 奠菜, 記行事時及所用物, 記笄女及教, 記祭行之期, 記五禮之辭(4句), 記父醴子辭, 記親迎送女諸辭, 記不親迎婿見父母之儀
	士相見禮 (13句)	初相見, 復見, 士見于大夫, 士嘗爲臣者見于大夫, 大夫相見, 大夫士庶人見于君, 他邦之人見于君, 燕見于君, 言視之法(2句), 侍左于君子, 士大夫侍飲食于君, 執幣玉之儀, 自稱于君
	鄉飲酒禮 (24句)	謀賓介, 戒賓介, 設席器, 速賓介, 迎賓拜至, 主人獻賓, 賓酢主人, 主人酬賓, 主人獻介, 主人自酢于介, 主人獻衆賓, 一人舉觶, 樂賓立司正, 旅酬, 二人舉觶, 徹俎, 說履升坐, 無筭爵, 賓出, 遵者之禮, 拜賜拜辱, 息司正, 記牲, 記旅酬
	鄉射禮 (43句)	戒賓, 陳席器, 張侯, 速賓, 迎賓拜至, 主人獻賓賓酢主人主人酢賓獻衆賓一人舉觶樂立司正, 請射, 納射器, 比三耦, 繫網倚旌, 遷樂, 三耦就射位, 誘射, 初射(2句), 取矢加于楅, 再請射比衆耦, 三耦取矢于楅, 衆耦皆就射位, 再射, 再取矢, 告獲, 飲不勝者, 獻獲者, 獻釋獲者, 三請射, 射者皆取矢于楅, 三射, 取矢告獲如初, 飲不勝者如初, 射者復取矢于楅, 射事畢, 旅酬, 二人舉觶徹俎說履升坐無筭爵賓出拜賜拜辱息司正, 記笙, 記侯, 記物, 記主皮, 記鄉侯之度, 記箭籌, 記中與獲之等, 記人臣無國中之射, 記大夫侍君射袒法
	燕禮 (36句)	戒與燕者, 具設器饌, 卽位, 命賓及執事者, 賓入主人獻賓賓酢主人, 主人獻公, 主人自酢, 脡解于公, 公爲賓舉旅, 主人獻諸公卿, 再脡解, 公爲諸公卿舉旅, 主人獻大夫工歌, 公爲大夫舉旅, 樂備, 立司正, 徹俎, 說履升坐差, 主人獻士, 燕射, 賓脡解于公, 公爲士舉旅, 主人獻庶子以下, 無筭爵, 賓出, 公與客燕, 記服及燕所, 記與四方之賓燕之事, 記爲賓者, 記羞者執器者, 記有盛樂之事(2句), 記有俎者, 記授公爵之辭, 記栗階之節, 記與四方賓燕之辭及樂
	大射 (52句)	戒百官, 張侯, 縣, 陳設, 卽位, 命賓及執事者, 賓入, 主人獻賓賓酢主人主人獻公, 主人自酢, 主人酬賓, 脡解于公, 公爲賓舉旅, 主人獻諸公卿, 再脡解于公, 公爲諸公卿舉旅, 主人獻大夫, 工歌下管, 立司正, 請射, 納射器畫物, 誓太史比三耦, 誘射初射取矢, 再請射, 比耦, 三耦取矢于楅, 再射(4句), 再取矢, 告獲, 飲不勝者, 獻獲者之屬, 獻釋獲者, 三請射, 耦皆取矢于楅, 三射, 取矢告獲如初, 飲不勝者如初, 耦皆取矢于楅, 射事畢, 公爲大夫舉旅, 徹俎, 說履升坐, 主人獻士, 賓脡解于公, 公爲士舉旅, 復射, 主人獻庶子以下, 無筭爵, 賓出公入
	聘禮 (70句)	命使介, 具聘物, 夕幣(2句), 釋幣, 受命(3句), 遂行, 過他國, 習儀(2句), 及竟, 請事, 展幣, 請行郊勞(2句), 至朝, 致館, 設餐, 賓至朝, 迎賓, 行聘禮, 享, 聘享夫人, 因聘有言, 醴賓, 賓私覲, 介私覲, 賓出公送, 卿大夫勞賓介, 歸賓饗餼(2句), 歸上介饗餼, 餼士介, 問卿, 賓私面, 上介私面, 衆介私面, 賓退, 問下大夫嘗使者, 代受問, 夫人歸禮于賓介, 大夫饋賓介, 饗食燕羞獻, 致饗食, 大夫饗食, 還玉及賄禮, 公館賓, 賓拜賜, 贈, 歸反命(2句), 釋幣于門釋奠于禰, 記有故加書, 記受命始行諸事, 記圭纆, 記辭, 記館并管人所共, 記餐, 記聘容, 記聘享覲之容, 記執圭之容, 記貨幣之度, 記醴賓之事, 記以饗餐, 記主國禮賓之節與羞獻, 記公館賓之事, 記米禾之量
	公食大夫禮 (20句)	戒賓, 賓卽位于大門外, 陳設迎賓, 鼎入載俎, 設正饌, 賓祭正饌, 設加饌, 賓祭加饌, 賓食, 侑幣, 賓拜侑幣, 卒食, 賓出, 歸賓俎, 賓拜賜, 食上大夫禮, 致食禮, 大夫相食, 記鋼芼, 記上大夫筮
	覲禮 (14句)	郊勞, 賜舍, 戒覲日, 受舍于朝, 釋幣于禰, 行覲禮(2句), 三享, 告聽事, 王勞, 賜車服(2句), 言稱謂與其禮, 大朝覲之禮

書名	篇名	句節의 제목
〈儀禮手圈〉	特牲饋食禮 (40句)	筮日, 筮尸, 宿尸, 視濯視牲爲期, 亨饌陳設, 卽位, 設饌祝神, 尸入, 尸食, 主人酌尸, 尸酢主人, 主人獻祝佐食, 主婦獻尸尸酢, 主婦獻祝佐食, 賓長獻尸尸止, 主婦致爵于主人自酢, 主人致爵于主婦自酢, 賓作止爵尸酢賓賓獻祝佐食致于主人主婦自酢, 主人獻賓長自酢, 主人獻衆賓, 主人酬賓長, 主人獻長兄弟自酢, 主人獻衆兄弟, 主人獻內兄弟自酢, 長兄弟爲加爵, 衆賓長爲加爵止, 嗣舉奠, 兄弟之弟子舉解于其長, 祭香乃羞, 賓與兄弟旅酬, 衆賓長作止爵, 兄弟與賓旅酬, 弟子各舉解遂無筭爵, 佐食獻尸祝, 尸出, 養 (2句), 徹改設, 禮畢, 記祭服
	少牢饋食禮 (23句)	筮日, 筮尸宿尸, 爲期, 視殺, 概器, 實鼎陳設器饌, 卽位筮几, 舉鼎載俎, 設饌祝神(3句), 尸入, 尸食(2句), 主人酌尸, 尸酢主人, 主人獻祝佐食, 主婦獻尸尸酢, 主婦獻祝佐食, 賓獻尸尸酢, 賓獻祝, 尸出祭畢, 養
	有司徹 (33句)	新僎禮, 立侑, 迎尸侑陳設鼎俎, 授几, 主人獻尸主婦薦豆邊, 通言載俎之法, 主人獻侑尸酢主人, 主婦獻尸酢侑致爵于主人尸酢主婦, 上賓獻尸主人酬尸羞于尸侑主人主婦, 主人獻長賓主人辯獻衆賓主人自酢, 主人酬賓獻兄弟獻內賓獻私人, 尸作止爵, 上賓獻侑致于主人尸酢上賓, 二人舉解于尸侑, 旅酬, 羞于堂下及房中, 兄弟後生舉解于其長, 次賓獻致賓一人舉解于尸遂旅酬, 堂下相酬無筭爵, 尸出禮畢, 不賓尸尸食之禮, 主人酌尸尸酢主人主人獻祝佐食, 尸止, 主婦致爵于主人自酢, 尸作醋賓賓長獻祝佐食致于主人主婦, 羞于尸祝主人主婦, 主人獻賓至私人, 羞于堂下及房中, 次賓獻致旅酬無筭爵, 上利獻尸祝尸出, 養, 改設, 禮畢
合計	13篇	433句
〈周禮手圈〉	(天官冢宰) (33句)	天官冢宰(2句), 大宰(7句), 小宰(2句), 宰夫, 宮正, 宮伯, 膳夫, 庖人, 內饗, 甸師, 獸人, 食醫, 瘍醫, 酒正, 凌人, 籩人, 醢人, 鹽人, 掌舍, 掌次, 大府, 玉府, 內府, 外府, 司會, 司書, 司裘, 掌皮, 內宰, 九嬪, 世婦, 女御, 女史, 內司服
	(地官司徒) (41句)	地官司徒(2句), 大司徒(9句), 小司徒, 鄉師, 鄉大夫, 州長·黨正·族師, 閭胥, 封人, 鼓人, 牧人, 牛人, 充人, 載師, 遺人, 均人, 師氏, 保氏, 司諫, 調人, 媒氏, 司市, 泉府, 司門, 掌節, 遂人, 旅師, 委人, 草人, 稻人, 山虞, 林衡, 司稼
	(春官宗伯) (53句)	春官宗伯(2句), 大宗伯(10句), 小宗伯, 肆師, 鬱人·鬯人, 雞人, 司尊彝, 天府, 典瑞, 典命, 司服(3句), 世婦, 墓大夫, 大司樂(4句), 樂師, 大胥, 小胥(2句), 大師(2句), 瞽矇, 眡瞭·典同, 磬師·鐘師, 鞀師·旄人, 籥師·籥章, 鞀韞氏, 大卜, 筮人, 占夢, 祝, 巫, 大史·小史, 馮相氏, 保章氏, 內史·外史·御史, 巾車(2句), 司常
	(夏官司馬) (23句)	夏官司馬(2句), 大司馬(4句), 司勳, 馬質, 司爨, 挈壺氏, 射人, 羅氏, 司士(2句), 虎賁氏, 大僕, 小臣, 司弓矢, 戎右, 大馭, 校人, 廋人, 職方氏
	(秋官司寇) (27句)	秋官司寇(2句), 大司寇(3句), 小司寇(2句), 士師, 鄉士·遂士·縣士·方士, 朝士, 司民, 司刑, 司刺, 司約·司盟, 職金, 司圜, 掌戮, 司隸, 布憲, 萍氏, 司寤氏, 司煊氏, 伊耆氏, 大行人(2句), 小行人, 司儀
	冬官(考工記) (43句)	考工記(5句), 輪人(2句), 輿人, 輈人(2句), 攻金之工, 築氏, 冶氏, 桃氏, 鳧氏, 栗氏, 函人, 鮑人, 鞞人, 設色之工, 鍾氏, 旒氏, 玉人, 磬氏, 矢人, 陶人, 旄人, 梓人(3句), 廬人, 匠人(7句), 車人(2句), 弓人(3句)
合計	6篇	220句
〈禮記手圈〉	曲禮	55句
	檀弓	42句
	王制	23句
	月令	31句
	曾子問	1句
	文王世子	5句
	禮運	14句
	禮器	10句
郊特牲	26句	

書名	篇名	句節의 제목
〈禮記手圈〉	內則	29句
	玉藻	24句
	明堂位	17句
	喪服小記	1句
	大傳	9句
	少儀	4句
	學記	15句
	樂記	27句
	雜記	2句
	祭法	6句
	祭義	16句
	祭統	8句
	經解	3句
	哀公問	2句
	仲尼燕居	4句
	孔子問居	1句
	坊記	6句
	表記	8句
	緇衣	8句
	問喪	1句
	三年問	1句
	深衣	5句
	投壺	12句
	儒行	19句
	冠義	1句
	昏義	3句
	鄉飲酒義	2句
	射義	3句
	燕義	2句
	聘義	2句
合計	39篇	448句
總合計	58篇	1,101句

『士虞禮(사우례)』 등의 4편을 제외한 13편을 대상으로 하여 총 433구를 절록하였으며,⁴⁾ 『주례』는 6편을 모두 포함하여 총 220구를 절록하였으나, 『예기』에서는 「喪大記(사상기)」, 「中庸(중용)」, 「奔喪(분상)」, 「服間(복문)」, 「間

傳(간전)」, 「大學(대학)」, 「喪服四制(상복사제)」 등의 7편을 제외한 39편 중에서 448구를 절록하고 있다. 『의례』에서 제외된 4편과 『예기』에서 제외된 7편 중 「중용」과 「대학」 이외의 5편은 모두 喪禮(상례)이자 凶禮(흉례)에

4) 선행연구에서는 『의례』17편 모두를 대상으로 절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속하는데, 같은 상례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수록된 편들을 살펴보면 『檀弓(단궁)』 42구, 『증자문』 1구, 『상복소기』 1구, 『대전』 9구, 『문상』 1구, 『삼년문』 1구이다. 그 중 『단궁』편에 나오는 상례 규정들은 『의례』에 서술된 것과 상이한 부분이 많으며 일화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어 『예기』가 가진 특수성을 잘 보여주므로 절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며, 『대전』편은 상례보다는 고대의 중법제도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의 다른 상례에 대해 서술한 편들은 대부분 1구씩 수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례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다.⁵⁾ 즉, 정조는 『삼례수권』을 편찬할 때에 상례와 관련된 부분은 구성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례』의 강목에서는 원전에는 구분이 따로 없는 각 절차를 요약하여 구절의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만하다. 『주례』의 경우, 원전에서 편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상위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하위에 속하는 관직명과 나란히 두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⁶⁾ 이와 같이 원전과 사뭇 다른 항목 구분은 극도로 요약되는 것을 추구하는 초본의 효율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헌이 독자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편찬되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전 선본 편찬 시 편명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구성(윤현정, 2016)을 보였던 정조의 이전 행적을 참고해본다면, 문헌마다 강목 설정이 다른 『삼례수권』의 독특한 구성은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다.

3. 三禮 존송의 배경

3.1 三禮의 성립과 흐름

삼례란 冠·昏·喪·祭·鄉·射·朝·聘(관·혼·상·제·향·사·조·빙) 등 각종 禮式(예식)의 진행 절차와 제반 규정을 서술한 『의례』, 周나라 조정의 관직 체계와 각급 관원의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제도를 기술한 『주례』, 예의 의미와 예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각종 制度(제도), 禮節(예절), 格言(격언), 器物(기물) 등에 대해 설명한 『예기』의 세 문헌을 말한다. 儒家(유가)에 있어서 ‘예’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天理(천리)를 차등에 맞게 객관적으로 표준화하여 규정한 사회준칙으로 여겨지는데, 춘추시대에 예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자 공자가 이를 규탄하며 『詩經(시경)』, 『書經(서경)』, 『禮經(예경)』, 『樂經(악경)』, 『易經(역경)』, 『春秋(춘추)』 등 이른바 ‘六經(육경)’을 刪定(산정)하여 성현들의 가르침을 전

5) 각 편에서 절록된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曾子問』“嫁女之家，三夜不息燭，思相離也。”

『喪服小記』“親親，以三爲五，以五爲九，上殺下殺，旁殺而親畢矣。”

『問喪』“人情之實也，禮義之經也，非從天降也，非從地出也，人情而已矣。”

『三年問』“凡生天地之間者，有血氣之屬必有知，有知之屬莫不知愛其類。今是大鳥獸，則失喪其群匹，越月踰時焉，則必反巡過其故鄉，翔回焉，鳴號焉，躑躅焉，踟躕焉，然後乃能去之。小者至於燕雀，猶有啁噉之頃焉，然後乃能去之。故有血氣之屬者，莫知於人，故人於其親也，至死不窮。”

6) 때문에 <표 1>에서 괄호 처리하였다.

하였고, 이 문헌들은 이후 秦代(진대)의 焚書坑儒(분서갱유)를 거치며 산실되었다가, 漢代(한대) 挾書律(협서율)이 폐지되고 나서야 수습되었다. 이 때, 예와 관련된 문헌은 대략 『의례』(당시 『士禮(사례)』 혹은 『禮經(예경)』 등으로 불렸다.), 『주례』(당시 『周官(주관)』으로 불렸다.), 그리고 『예기』로 정리되었고, 이 세 문헌을 ‘삼례’라는 개념으로 처음 정립한 것은 東漢(동한) 말 鄭玄(정현)으로, 세 문헌에 대해 교감 작업을 진행하고 주석을 달고 해제를 기록하여 삼례서를 定本化(정본화)하고 그 체제를 정립하였다(박례경, 2004: 2016).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의례』는 『사례』로 불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秦 博士 高堂生(진 박사 고당생)이 전한 공자 산정의 『예경』 중 『사례』에 해당하는 17편에서 연원하므로 본래의 『예경』에 가깝기 때문에 존송되었고, 漢武帝(한 무제) 시기에 이르러서는 유학사상을 국가통치이념으로 정착시킨 五經博士(오경박사)에 최초로 편입되었으므로 중요한 문헌으로 여겨졌다. 『주례』는 劉歆(유흠)이 “周公(주공)이 太平盛世(태평성세)를 이루어 놓은 공적을 담아놓은 책”이라 평가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성행하였고, 정현 역시 『주례』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두 문헌의 주석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반면, 『예기』는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기』의 본래 명칭이 ‘記(기)’인 것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예기』는 본래 『의례』에 대한 오랜 시대 동안의 수많은 기록들을 漢 宣帝(한 선제) 때 戴德(대덕)이 85편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大戴禮記(대대례기)』와 戴聖(대성)이 정리하여 편찬한 『小戴禮記(소대례기)』 49편에서 연원

하였으며, 정현이 그 중 『소대례기』를 주석하면서 삼례에 편입된 문헌이기 때문이다. 즉, 西漢代(서한대)에는 『의례』만이 『예경』으로 간주되었고, 東漢(동한) 시기에 이르러 고문 경학의 발전하면서 『주례』도 존송되었으며, 『예기』는 ‘예’에 대한 여러 기록에 해당하는 ‘傳(전)’으로 간주되었다(김인규, 2021).

이와 같은 흐름은 唐代(당대)에 이르러 뒤바뀌게 된다. 孔穎達(공영달)이 국가사업으로 『五經正義(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의례』와 『주례』가 아닌 『예기』를 오경에 편입하면서 『예기』의 위상이 다른 두 문헌을 압도하게 된다. 공영달이 삼례 중 『예기』에만 주소를 달았던 까닭에 대해서는, 『의례』는 실질적인 예의 節文을 기록하고 있는 실용 禮書(예서)이고 『주례』는 관제를 다룬 제도서이므로, 예의 본질적 의의를 다루고 있는 『예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고금에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간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후 『의례』와 『주례』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이들을 明經科(명경과)에 포함시키며 ‘九經(구경)’이 정립되기도 하였지만, 北宋代(북송대)에 다시 과거제 과목 중 『의례』가 제외되면서 중요성을 되찾지 못하였다(이세동, 2009).

오경에 편입되며 높아진 『예기』의 위상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입된다. 삼국시대 國學(국학)과 讀書三品科(독서삼품과)에는 『예기』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려의 國子監(국자감)에서는 『주례』와 『예기』를 교육하였다. 조선의 과거제도 역시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기』가 중요시되는 흐름이 굳어지게 되었다.

3.2 정조의 三禮에 대한 관점

3.2.1 五經과 三禮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례수권』은 『사부수권』의 일부로서 ‘경부’에 해당하는 초본이다. 정조는 이전에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八子百選(팔자백선)』, 주자의 편지를 대상으로 한 『朱書百選(주서백선)』, 사마천의 『史記(사기)』를 대상으로 한 『史記英選(사기영선)』, 陸宣公(육선공)의 奏議文(주의문)을 대상으로 한 『陸奏約選(육주약선)』, 경서인 五經(오경)을 대상으로 한 『五經百篇(오경백편)』, 杜甫(두보)와 陸游(육유)의 시를 대상으로 한 『杜陸千選(두륙천선)』 등 6종의 선본 시리즈를 편찬한 바 있는데, 이들 선본 역시 경·사·자·집의 사부를 균형 있게 모두 포함하고 있고, 많은 양의 원전을 통독하기에 편하도록 선본의 형태로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사부수권』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6종의 선본을 편찬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초록 작업을 시행하여 초본으로 요약한 결과물이 『사부수권』이라는 맥락이 다수이나, 이는 실제 『사부수권』의 구성과 절록 양상을 검토해보면 사실이 아니므로(윤현정, 2021)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조의 선본 시리즈 중에서 경부에 해당하는 문헌은 『오경백편』으로 『역』, 『시』, 『서』, 『춘추』, 『예기』의 다섯 경전에서 100편의 문장을 선별하고 있는 반면, 초본인 『사부수권』에서는

유가의 경전 중에서도 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삼례를 대상으로 하여 『삼례수권』을 편찬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오경백편』에는 『예기』중에서도 「악기」와 「대학」, 「중용」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사부수권』에서는 『예기』중에서도 「대학」, 「중용」은 수록하지 않고 있어, 정조가 선본과 초본을 각각 편찬한 목적은 물론 오경과 삼례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경과 삼례의 성립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재차 인지할 필요가 있다.

3.2.2 『의례』와 『주례』 존송

정조가 『사부수권』에서 오경이 아닌 삼례를 경부 초본의 원전으로 삼은 까닭은 그의 朱子 존송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정조의 주자 존송은 정조 본인의 언급이 다수 기록으로 남아있고, 실제로 『朱子會選(주자회선)』, 『紫陽子會英(자양자회영)』, 『朱子選統(주자선통)』, 『朱書百選(주서백선)』, 『雅誦(아송)』, 『朱子書節約(주자서절약)』에 이르기까지 주자의 ‘一通之書(일통지서)’를 집대성하고자 주자 관련 문헌을 다수 편찬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⁷⁾ 정조의 삼례에 대한 관점 역시 주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주자는 삼례 중에서도 『의례』를 중시하여 당시 과거제도 과목에서 『의례』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의례』를 經으로 삼고 『예기』를 傳으로 삼아 『儀禮經傳

7) 『弘齋全書』165卷 日得錄 5 文學

“予於朱子，尊慕而表章之者，靡所不用其極。於其書，有百選輯要等手所編述者，大全集與遺書語類諸書，反復莊誦，拳拳服膺，嘗爲之手校，爲之手鈔。蓋自童習，式至于今，未嘗或懈。而但念朱子平生纂述，極其廣博。自經書集傳集註章句通解或問以外，片言單辭之散見而錯出者，何莫非精義達辭，則彙括廣蒐，又將不知其爲幾何。每欲勒爲一通之書，集其大成，纖悉靡遺，以其事鉅而工博，有未可以遽議而驟圖也。”

通解(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정조가 주자와 같은 관점에서 『의례』를 중시한 점은 『삼례수권』의 卷首(권수)에 수록된 「親撰示校正諸學士(친찬시교정제학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三禮 같은 것은 그 내용은 오묘하고 그 일은 은미하며 그 문장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시기는 먼 옛날이다. 그중에서 더욱 생경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은 『儀禮』이다. ...(중략)... 朱子は 『의례』를 本經으로 삼고 『大戴禮記』를 傳으로 삼았으니, 魯 나라에 있던 禮를 아울러 후세에 바꾸지 못할 법칙이 된 것은 바로 『의례』이다. 그러므로 드디어 批點과 圈點을 가하기를 『周禮』와 『대례』까지 하고 命名하기를 『三禮手圈』이라고 하였다.⁸⁾

이상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삼례 중에서도 『의례』는 긴 시대를 관통하여 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지는 '예경'이며 주자가 이를 이해하고 『의례』를 중심으로 주석서를 편찬한 것과 같이 자신도 『의례』를 중심으로 비점과 권점을 가하고 『주례』와 『예기』도 더하여 『삼례수권』을 완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삼례 중에서도 『의례』를 가장 근본이 되는 문헌으로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이러한 관점이 주자와 같은 맥락이자 그의 뒤를 이은 것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조의 『의례』 존숭은 초계 문신의 親試(친시)와 再試(재시)에 내려진 아래의 策問(책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왕은 말하노라. 대단하다. 예라는 것이여. 세상에 전해지는 古禮가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의 예 중에 의례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선유들이 말하기를, “고례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儀禮』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韓文公 때부터 이미 읽기가 어렵다고 고심하였고, 한당 시대부터 이미 시행되는 것이 적다고 개탄하였다. 재주는 더욱 낮아지고 세상도 더욱 낮아지게 되었으니, 누가 읽겠으며 시행될 날은 없는 것이냐? ...(중략)... 옛 성인이 천하를 경륜하던 커다란 원칙과 법이 이 책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깨닫기 어렵다고 뜻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직 주자만이 이 뜻을 알고 『儀禮經傳通解』를 저술하면서 『의례』로 주간을 삼고 『周官』과 『禮記』 및 그 밖의 다른 경전에서 예에 관해 말한 것을 유별로 부록하였다.⁹⁾

이상의 책문에서 정조는 삼례 중에서 『의례』가 가장 오래되어 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 온 시대를 개탄하며,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던 심오하고 오묘한

8)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若所謂三禮，其辭則奧，其事則嫩，其文則燦然，其時則遠焉，而尤不可硬解者儀禮也。...(中略)... 然而朱子以儀禮爲本經，戴禮爲傳，則並與在魯之禮，爲後世不祧之法者，惟儀禮是已，故遂加批圈，以至周禮戴禮，而命之曰三禮手圈。”

9) 『弘齋全書』51卷 策文 4 儀禮 到記儒生更試及抄啓文臣親試更試

“王若曰，大矣哉！禮也。古禮之傳於世者有三，而三禮之中，儀禮最古。故先儒云，欲復古禮者，必自儀禮始。然自韓文公，已苦其難讀，自漢、唐，已歎其寡行，則才愈降而世愈下，讀者其誰，行之無日歟？...(中略)... 古聖人經綸天下之大本大法，獨賴此篇之存，則學者其可以難曉，而不加之意哉？惟朱子知此義，著儀禮經傳通解，以儀禮爲主，以周官禮記及他經傳之言禮者類附之。”

원칙과 법이 『의례』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이 문헌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자만이 이를 알고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한 사실을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해당 책문은 이후 주자 이후 일부 학자들이 『의례』를 분석하여 저술한 문헌들¹⁰⁾을 나열하면서 정조 본인도 『의례』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지만 아직 그 깊은 뜻을 터득하지 못하였는데, 더욱이 당시의 학자들이 육경 중에 이 책만을 빠뜨리고 강구하지 않아서 조정에 顧問(고문)을 삼을 사람이 없는 것을 심히 개탄하며 각기 상세히 진술해볼 것을 권하는 말로 마무리된다. 앞서 인용한 「친찬시교정제학사」에서도 『의례』의 심오하고 읽기 어려운 점에 대해 말하며 ‘(여러 관련 문헌을 살펴봐도) 오히려 막혀서 알 수 없는 곳이 있는 것은 熙寧(희녕, 宋 神宗(송 신종)의 연호) 이후로 『의례』에 대하여 學官(학관)을 세우지 아니하여 마침내 스승을 계승하여 教授(교수)하는 유익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¹¹⁾라고 말하여 『의례』를 중시하지 않는 세대를 비판하였다.

한편, 정조는 삼례 중 『의례』에 못지않게 『주례』역시 중요시하였는데, 아래 인용문은 정조가 『사부수권』을 완성하고 나서 金鍾秀(김중수)에게 『삼례수권』의 발문을 부탁하며 내린

글 중 일부이다.

여러 篇 가운데서 삼례를 節約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儀禮』의 자잘하고 번거로운 형식 절차와 『周禮』의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手圈하기를 매우 상세히 하였고, 『戴氏禮』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¹²⁾

『사부수권』중에서도 삼례를 절록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며, 『의례』는 실용 예서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각 예식의 세세한 절차를 알맞게 절록하였고, 『주례』는 국가 관직 제도의 구체적인 綱目(강목)을 다루고 있는 제도서인지라 비권 작업을 상세하게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삼례수권』의 발문에 해당하는 「친찬시교정제학사」에서 “(『주례』 부분의) 圈點(권점)을 하는데 양이 많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¹³⁾라고 밝히고 “주권에서 토지를 맡아보는 직책을 중시하였으니, 또한 생략할 수가 없어서 原圈(원권)의 아래에 붙여 놓았다.”라거나 “『주례』에 冢宰(총재)가 玉帛(옥백)을 주는 것과 司服(사복)이 天王(천왕)을 위하여 斬衰服(참취복)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은 모두 諱(휘)할만한 구절이 아니므로, 함께 권점을 쳤다.”¹⁴⁾ 등의 언급과 같이 『주례』의

10) 『儀禮喪服圖式』, 『儀禮要義』, 『儀禮集說』, 『儀禮節解』등을 언급하였다. (門人黃勉齋, 楊信齋, 遵其義例, 續成二禮, 其後魏了翁有儀禮要義, 敖繼公有儀禮集說, 郝敬有儀禮節解, 各自成書, 傳之至今.)

11)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猶有所胃礙不通者, 蓋自熙寧以後, 儀禮不立學官, 而遂無師承教授之益而然也.”

12) 『弘齋全書』56卷 雜著 3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五首○附賜連山判府別幅二
“諸篇之中, 三禮最難節約, 而儀禮之彌文縟節, 周禮之設官分職, 圈之者頗詳, 戴氏禮則不然.”

13)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故圈之不嫌其多.”

14)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周官掌土之重, 亦不可以略之, 故附之原圈之左.”
“如周禮冢宰之贈玉帛, 司服之爲天王斬衰, 皆非可諱之節, 並圈之.”

몇몇 구절의 出入(출입)에 대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례』는 공자가 흠모했던 주공이 저술한 문헌으로 여겨져 왔는데, 정조는 이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翰林(한림) 중 권점을 받은 사람의 제시에 내려진 책문으로, 정조의 『주례』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왕은 말하노라. 『주례』라는 책은 周公이 洛邑을 건설한 후 정치한 제도의 유적이다. ...(중략)... 전국 시대의 터무니없는 책이라고도 하고, 육국의 음모를 꾀한 책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며, 혹은 劉歆의 위작이라고 하기도 하며, 혹은 秦 나라 때 불타고 남은 단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논에 대해 모두 그 사람을 지적하여 의문을 분석할 수 있겠느냐? ...(중략)... 선유들이 『주례』를 周 나라의 다스림을 이룩한 발자취이며 모든 제왕들이 법 삼을 거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 선비들이 고친 곳이 많아서 후인들이 반신반의하였는데, 濂溪와 洛陽의 제현들에 이르러 비록 결코 주공의 저작이라고 단정하였지 마는, 물명과 제도에서 제가들의 시비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아, 我朝는 聖神이 계승하여 치법과 政謨를 일체 周 나라를 따랐다. 부덕한 나로서도 특별히 이 책을 좋아하여 3일 동안 강론과 탐구에 힘을

소비하고 정치의 기준이 되는 방안을 도움 받았기에, 반드시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 주는 옛 성인의 뜻이 한갓 언어와 문자의 말단에만 깃들여 있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찌랴, 정치는 뜻을 따라 주지 아니하고 일은 모두 인습에 따를 뿐, 『주례』를 들먹여 인용하기라도 하면 우월하다고 몰아붙이고 섬세한 전모를 모방이라도 하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다고 힐난한다. ...(중략)... 어떻게 하면 주공의 심법을 얻고 주공의 제작을 따를 수 있어서 訓詁箋解로써 賈公彥과 鄭康成의 의논에만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實事와 實政에서 체험하게 하겠느냐? 아, 그대 子大夫는 들은 대로 모조리 들추어 나를 인도하라.¹⁵⁾

『주례』는 주공이 저술한 제도서임을 먼저 밝힌 후, 이 문헌의 편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명령하고, 모든 임금들이 법으로 삼아야 하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어서 정조 본인이 『주례』를 좋아하여 탐독하고 정사를 돌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았으나, 이를 인용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공의 뜻을 實政(실정)에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책문을 마무리 하고 있다. 즉, 治國(치국)에 있어서 『주

15) 『弘齋全書』48卷 策文 1 周禮 翰林被圈人更試

“王若曰, 周禮一書, 元聖營洛以後, 制治之遺蹟也. ...(中略)... 謂戰國不經之書者, 有之, 謂六國陰謀之書者有之, 或謂是劉歆偽作, 或謂是秦焰斷爛, 皆可指其人而析其疑歟? ...(中略)... 故先儒以周禮爲周家致治之迹, 而百王取法之鑑, 然漢儒之竄置既多, 後人之疑信相半, 至濂洛諸賢, 雖斷然以爲周公所作, 而名物制度之間, 諸家之聚訟, 蓋至于今未已矣. 猗歟! 我朝聖繼神承, 治法政謨, 一遵成周, 而逮予否德, 篤好是書, 三晝費講討之工, 萬機資柯則之方, 必欲使古聖人爲萬世開太平之意, 不徒寄於言語文字之末, 而奈之何治不溪志, 事皆因循, 言涉稱引, 則歸之以迂闊, 典做纖悉, 則難之以煩碎. ...(中略)... 何以則得周公之心法, 追周公之制作, 不惟以訓詁箋解, 規規於賈鄭之餘論, 而必驗之實事, 體之實政歟? 咨爾子大夫, 其悉以所聞, 闢予.”

례』의 중요성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보인다.

이에 더하여 『주역』, 『서경』, 『시경』, 『주례』에 수록된 주공의 글을 뽑아 엮은 문헌인 『周公書(주공서)』 발문에서도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정조 자신은 정자와 주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주례』를 주공의 저서로 여기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¹⁶⁾ 이를 통해 『주례』를 주공의 저작물로서 존송하는 점이 한편으로는 정조가 스스로를 공자와 주자의 도통을 잇는 역할을 자처했던 점(윤현정, 2015)과 연관지어보더라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정조의 『주례』 존송에 근거를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용된 책문에서 정조가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례』에서 왕을 최고 통치자로 두고 중앙 관직을 크게 6부서인 天·地·春·夏·秋·冬(천·지·춘·하·

추·동)의 六官(육관)으로 분류한 관직 체제 및 國家禮(국가례)는 치국의 大要(대요)로서 唐(당), 宋(송), 明(명)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왕조 내내 약간의 加減(가감)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기에 위정자로서 정조는 『주례』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로 정사를 돌보는 데에 『주례』를 인용하거나 언급한 일이 戶口(호구)¹⁷⁾, 課試(과시)¹⁸⁾, 內閣(내각) 관리들의 考課(고과)¹⁹⁾, 음악²⁰⁾, 隸屬(예속)의 服飾(복식)²¹⁾, 민생 교화²²⁾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많다. 즉, 정조는 君師(군사)로서 『주례』에 대해 『의례』 못지않게 통달하고 있었으며 삼례 중 『의례』와 『주례』 두 문헌을 높이 평가하고 존송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弘齋全書』182卷 羣書標記 4 周公書

“遂取易書詩禮所載周公文字而合釐之, 名曰周公書總九卷...(中略)...至於周禮, 在諸經中, 偏多異議, 或以爲瀆亂不經之書, 或以爲六國陰謀之書, 或作十論七難以排之, 而至程朱, 遂定爲非聖人做不得, 則彼摸索叩捫之見, 可歸之夷堅諾皋而不須問, 故周禮次於詩下. 漢儒之取考工記, 以補多官之闕, 亦猶大學之有補亡, 雖非周公所作, 而亦周公之書, 所不可闕者, 故附著于末.”

17) 『弘齋全書』113卷 經史講義 50 綱目 4

“戶口不明則豪右多饒, 而編戶之氓弊,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而受之.”

18) 『弘齋全書』113卷 經史講義 50 綱目 4

“課試之法, 蓋昉於周官之大比, 戴記之三適, 其法必先德行而後才藝.”

19) 『弘齋全書』166卷 日得錄 6 政事 1

“周禮, 三年有大計, 歲終有歲會, 月終有月要, 旬終有日成, 是歲月日, 皆有考功也. 內閣之十日考功, 蓋本於周禮日成之制.”

20) 『弘齋全書』167卷 日得錄 7 政事 2

“諭掌樂提舉曰, 近來專不肄樂, 管籥鐘磬, 不相和倫. 周禮上丁, 樂正習吹, 我朝則有二六習樂之法, 卿等其著意遵行, 俾正樂有和倫之美.”

21) 『弘齋全書』168卷 日得錄 8 政事 3

“近來隸徒服飾侈美, 或頭戴貂鼠, 身纏緇帛云, 是攸司之責耳. 周禮司隸掌五隸之屬, 一曰罪隸, 二曰蠻隸, 三曰閩隸, 四曰夷隸, 五曰貉隸.”

22) 『弘齋全書』169卷 日得錄 9 政事 4

“鄉飲酒, 乃鄉人以時聚會飲酒之禮也, 因飲酒而射, 則謂之鄉射, 飲以觀禮, 射以觀德, 此先王之教也, 後世不行焉, 非所以教民以禮也. 周禮司徒之職, 以鄉三物, 教萬民而賓興之.”

3.2.3 『예기』에 대한 관점

『의례』와 『주례』에 대한 존중에 비해 삼례 중 『예기』에 대한 정조의 관점은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앞서 인용된 김종수에게 『삼례수권』의 발문을 부탁하며 내린 글이나 「친찬시교정제학사」에서 ‘『의례』와 『주례』에 대해서는 手圈(수권)하기를 매우 상세히 하였고, 『戴氏禮(대씨례)』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대목이나 ‘비점과 권점을 가하기를 『주례』와 『대례』까지 하고 命名하기를 『삼례수권』이라고 하였다.’라는 구절로부터 『예기』는 단지 삼례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의례』 및 『주례』와 함께 초본 편찬의 대상으로 삼은 듯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편찬한 선본 『오경백편』에 수록된 『예기』와 함께 살펴보면 그 까닭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정조는 당대 문체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경학의 근원이 되는 오경 중에서 99편의 글을 엄선하면서 『예기』중에서는 「악기」와 「대학」, 「중용」3편만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程頤(정이)의 “『예기』는 「대학」과 「중용」을 제외하고, 오직 「악기」만이 도에 가깝다.”라는 언급을 정조도 수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악기」는 본래 육경 중에서 『악경』만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누락된 점을 보충하는 기록으로서 중시되었으며, 또한 유가는 사람들의 윤리도덕과 정감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활동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양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다(유

지신; 2010). 「대학」과 「중용」은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 『예기』에서 독립되어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사서)로 편입되면서 유가의 기초경전 중 하나로 승격된 글이다. 이 때, 정조는 ‘나는 朱子(주자)의 글을 經傳(경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며 『오경백편』의 「대학」과 「중용」부분에 각각 한 칸을 낮추어 주자의 大學章句序(대학장구서)와 中庸章句序(중용장구서)를 함께 수록하였다.²³⁾ 따라서 정조는 『오경백편』을 편찬할 때, 『예기』를 『악경』의 일부를 보존하고 있는 문헌이자 주자가 중시했던 「대학」과 「중용」이 수록된 문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삼례수권』 편찬 시에도 유지되어 아래의 인용문은 「친찬시교정제학사」중 일부로, 『예기』에 대한 정조의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의례』에는 士昏禮가 있고 『대례』에는 昏義가 있으며, 『의례』에는 士冠禮가 있고 『대례』에는 冠義가 있으며, 鄉飲酒禮와 鄉射禮, 그리고 燕禮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義가 禮에 대해서는 도와서 註를 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주자가 『의례경전통해』를 지은 까닭이며 手圈을 『의례』에서 취한 것이 많게 된 까닭인데, 『의례』의 여러 편에다 표시를 하여 기록하던 것이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대례』는 다시 그 표시와 기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간략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²⁴⁾

23) 『弘齋全書』 164卷 日得錄 4 文學

“予之尊閣朱子書，不下於經傳。故以庸學序，附入於五經百選之中。”

24) 『弘齋全書』 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儀禮有士昏禮，戴禮有昏義，儀禮有士冠禮，戴禮有冠義，以至鄉飲射燕，莫不皆然，則義於禮，不過翼註也。此朱子所以經傳之作，而手圈所以多取儀禮，而儀禮諸篇，有標以記之者，記其事也。戴禮又從標記而出，故不得不從簡也。”

『대례』, 즉 『예기』는 『의례』, 즉 『예경』에 표시를 하여 따로 ‘기록(記)’해두었던 일로부터 유래한 문헌이며, 두 문헌에 같은 예식을 다룬 부분이 나란히 존재하는 까닭은 이러한 『예기』의 성립 과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자가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하면서 『의례』를 중심으로 삼고 『예기』를 부차적으로 참고하였던 것보다도 일맥상통하며, 때문에 정조 본인도 『삼례수권』을 편찬할 때에 『의례』를 위주로 수권하였고, 『예기』는 간략하게 하였다는 설명이다. 『친찬시교정제학사』의 마지막에 『삼례수권』을 편찬한 뜻에 대해 말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뜻을 더욱 명확하고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모든 글자들은 어찌하여 經을 근거로 義를 탐구하고 義의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經으로 돌아오지 않는가.²⁵⁾

즉, 정조는 『예기』가 오경에 편입되어 그 위상이 높아져 존송되는 흐름이 대체로 굳어져 계속하여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례의 성립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기』에 대해 단지 주자 존송의 의미에서 ‘악기’와 ‘대학’, ‘중용’ 편찬을 높이 평가하고 부차적인 문헌으로 여겼으며, ‘傳(전)’ 성격의 『예기』보다는 ‘經’에 해당하는 『의례』를 더욱 중시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三禮手圈』의 질록 분석

4.1 『三禮手圈』의 질록 양상

『삼례수권』은 『사부수권』에 속하는 다른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정조 특유의 독자적인 질록 방식이 아닌 『삼례수권』에서만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해진 질록 양상을 보인다. 선본이지만 초절의 형식으로 편찬된 『육주약선』이나 같은 『사부수권』에 속하는 초본 『팔기수권』, 『양경수권』 등의 문헌에서 나타난 정조의 질록 양상은, 주어나 부사절, 접속사 등의 역할을 하는 사소한 글자를 삭제하고 맥락 상 불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생략하여 그 앞뒤 부분을 과감하게 합쳐 거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까운 질록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김민현, 2015; 윤현정, 2021; 2022). 반면, 『삼례수권』에서는 이와 같이 섬세하고 과감한 질록 방식이 매우 드물고, 대부분 특정 구절을 가능한 한 온전히 수록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삼례 각 문헌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질록 규칙을 보인다. 정조는 『삼례수권』에서 나타나는 질록 양상의 특수성에 대해 이하와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대저 《주례》와 《의례》는 바로 동일한 科條의 서책이니, 祭祀·朝覲·燕饗·軍旅에 관한 일과, 冠昏·饋食·射飲·登降에 대한 절차, 壇廟·宮室·輿衛·器服의 품류는 文字를 가지고 본보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간혹 儀章에 빠진 것이 있으니, 이것이 비점과 권점을 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책과 규례가 달라

25)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凡百君子曷不因經而究義, 因義而反經?”

서로 따를 수 없는 까닭이다.²⁶⁾

이상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주례』와 『의례』에 대해서는 비권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다른 서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삼례수권』의 특수한 절록 양상을 각 문헌별로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4.1.1 「周禮手圈」의 절록 양상

『주례수권』은 서술이 일정한 制度書(제도서)에 해당하는 『주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절록 규칙이 잘 드러나 있는데, 『주례』의 「天官冢宰(천관총재)」편의 〈小宰(소재)〉 부분 절록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小宰之職：掌建邦之官刑，以治王宮之政令，凡宮之糾禁，掌邦之六典、八法、八則之貳，以逆邦國、都鄙、官府之治。執邦之九貢、九賦、九式之貳，以均財節邦用。

以官府之六敘正群吏：一曰以敘正其位，二曰以敘進其治，三曰以敘作其事，四曰以敘制其食，五曰以敘受其會，六曰以敘聽其情。

以官府之六屬舉邦治：一曰天官，其屬六十，掌邦治，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二曰地官，其屬六十，掌邦教，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三曰春官，其屬六十，掌邦禮，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四曰夏官，其屬六十，掌邦政，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五曰秋官，其屬六十，掌邦刑，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六曰冬官，其屬六十，掌邦事，大事則從其長，小事則專達。

以官府之六職辨邦治：一曰治職，以平邦國，以均萬民，以節財用。二曰教職，以安邦國，以寧萬民，以懷賓客。三曰禮職，以和邦國，以諧萬民，以事鬼神。四曰政職，以服邦國，以正萬民，以聚百物。五曰刑職，以詰邦國，以糾萬民，以除盜賊。六曰事職，以富邦國，以養萬民，以生百物。

以官府之六聯合邦治：一曰祭祀之聯事，二曰賓客之聯事，三曰喪荒之聯事，四曰軍旅之聯事，五曰田役之聯事，六曰斂弛之聯事。凡小事皆有聯。

以官府之八成經邦治：一曰聽政役以比居，二曰聽師田以簡稽，三曰聽閭里以版圖，四曰聽稱責以傳別，五曰聽祿位以禮命，六曰聽取予以書契，七曰聽賣買以質劑，八曰聽出入以要會。

以聽官府之六計，弊群吏之治：一曰廉善，二曰廉能，三曰廉敬，四曰廉正，五曰廉法，六曰廉辨。

원문 중 음영표시한 부분이 『주례수권』에 수록된 구절인데, 일정하게 반복되는 序數(서수)와 ‘以敘(이서)’, ‘以官府之(이관부지)’, ‘之聯事(지련사)’와 같은 附言 등을 일체 생략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례』는 육관의 각 장관의 주요 직무와 속관의 조직 및 인원수를 기록한 서두의 ‘序官(서관)’ 부분과 이에 속하는 관직의 구체적인 직무들을 서술한 ‘職文(직문)’ 부분으로 구분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일정한 절록 양상은 예시로 제시한 「천관총재」편뿐만 아니라 나머지 5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도서리는 문헌의 특성 상 그 서술 방식에 있어서

26) 『弘齋全書』181卷 羣書標記 3 三禮手圈 「親撰示校正諸學士」

“大抵周禮儀禮，卽一科條書也。祭祀朝覲燕饗軍旅之事，冠昏饋食射飲登降之節，壇廟宮室與衛器服之品，有不可律之以文字，而或闕於儀章，此所以批圈之與他書殊例而不相沿者。”

도 수식어나 군더더기 글자가 적어, 앞뒤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절록하여 합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까운 정조 특유의 절묘한 절록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주례수권』에서는 『주례』 각 편의 ‘서관’ 부분의 인원수 부분을 생략하고 속관의 명칭만을 수록하였고, ‘직문’ 부분에서 속관의 구체적인 직무를 서술한 부분만을 대부분 온전하게 수록하되 반복되는 글자들은 철저히 생략하고 있다.

4.1.2 「儀禮手圈」의 절록 양상

『의례』의 경우, 각 예의 절차를 서술한 문헌이기 때문에 그 문체가 『주례』에 비해서는 덜 딱딱하고 서술형에 가까워 규칙적이지 않지만, 『의례수권』의 절록 양상을 살펴보면 내용면에 있어서 取捨(취사)의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관례」에서 孤子(고자)와 庶子(서자), 그리고 관례를 치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부재중인 경우 달라지는 절차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일체 생략하였고, 「士昏禮(사혼례)」에서는 庶婦(서부, 서자의 아내)일 경우 다른 점을 서술한 부분도 생략하는 식이다. 정조는 「公食大夫之禮(공식대부지례)」의 ‘賓出(빈출)’ 절차에서 ‘賓出’이라는 단 두 글자만을 절록하는 등, 『의례수권』에 각 예의 아무리 사소한 절차라도 빠뜨리지 않고 절록하였는데, 때문에 『의례수권』은 각 절차를 요약한 구절의 이름만 살펴보다라도 해당 예식이 진행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절록되지 않은 절차는 해당 예식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생략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례수권』의 절록 양상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각 예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축하의 말, 감사의 말, 훈계하는 말, 칭하는 말 등 각종 언사에 해당하는 ‘辭(사)’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혼례」에서 納采(납채)의 예를 행할 때 하는 昏辭(혼사: 吾子有惠, 既室某也. 某有先人之禮, 使某也請納采. 對曰 某之子蠢愚, 又弗能教. 吾子命之, 某不敢辭.)와 納徵(납징)의 예를 행할 때 하는 言辭(언사: 吾子有嘉命, 既室某也. 某有先人之禮, 儷皮束帛, 使某也請納徵.)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절록하는 식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는 이하와 같다.

始加 祝曰: 「令月吉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惟祺 介爾景福。」

再加 曰: 「吉月令辰 乃申爾服 敬爾威儀 淑慎爾德 眉壽萬年 永受胡福。」

三加 曰: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耇無疆 受天之慶。」

醴辭曰: 「甘醴惟厚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醢辭曰: 「旨酒既清 嘉薦宜時 始加元服 兄弟具來 孝友時格 永乃保之。」

再醢 曰: 「旨酒既滑 嘉薦伊脯 乃申爾服 禮儀有序 祭此嘉爵 承天之祜。」

三醢 曰: 「旨酒令芳 饔豆有楚 咸加爾服 餽升折俎 承天之慶 受福無疆。」

字辭曰: 「禮儀既備 令月吉日, 昭告爾字 爰字孔嘉 髦士攸宜 宜之于假 永受保之 曰伯某甫。」仲、叔、季, 唯其所當。

이상의 인용문은 『의례』 「사관례」 중 賓이 冠을 씌워주면서 하는 祝辭(축사)와 醴酒(예주)를 따라주며 醴禮(예례)를 행할 때 하는 醴辭(예사), 淸酒(청주)를 따라주며 醯禮(초례)를 행할 때 하는 醯辭(초사), 字(자)를 지어줄 때 하는 字辭(자사)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 원문 중 「의례수권」에 수록된 구절을 음영 처리한 것이다. 각 예를 행할 때에 축복하거나 교훈을 주며 건네는 말들을 생략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언사들은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정형화되어 있어 완전하게 암송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수 수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예에서 '位次(위차)'를 받는 절차나 예식의 주체가 되는 인물의 背向(배향)에 대한 설명 혹은 예가 행해질 때 부차적으로 쓰이는 기물을 陳設(진설)할 때 그 위치와 방향 등에 대해 서술한 부분도 일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이하는 『의례』 「覲禮(근례)」 중 候氏(후씨)가 왕에게 예물을 進獻(진헌)하는 '享(향)'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의 원문 중 「의례수권」에 수록된 구절을 음영 처리한 것이다.

四享皆束帛加璧 庭實唯國所有 奉束帛 匹馬卓上 九馬隨之 中庭西上 奠幣 再拜稽首 擯者曰：「予一人將受之」 侯氏升 致命 王撫玉 侯氏降自西階 東面授宰幣 西階前再拜稽首 以馬出 授人 九馬隨之 事畢

후씨가 10마리의 말을 뜰 중앙에서 서쪽을 윗자리로 삼아 진열하고서 再拜(재배)하는 과정과 예물을 바친 후 당에서 서쪽 계단으로 내

려가 동쪽을 향하여 폐백을 건네준 뒤, 서쪽 계단의 앞에서 재배를 하는 등 '위치'와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절록하지 않고, 해당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씨가 당에 올라가 예물을 바치고 왕이 옥을 어루만지는 부분'만을 절록하고 있다.

厥明夕 陳鼎於門外 北面北上 有甞 楹在其南 南順實獸於其上 東首 牲在其西 北首 東足 設洗於降階東南 壺 禁在東序 豆 籩 銅在東房 南上 幾 席 兩敦在西堂 主人及子姓兄弟 卽位於門東 如初 賓及衆賓卽位於門西 東面北上 宗人 祝立於賓西北 東面南上 主人再拜 賓答再拜 三拜衆賓 衆賓答再拜 主人揖入 兄弟從 賓及衆賓從 卽位於堂下 如外位 宗人升自西階 視壺濯及豆籩 反降 東北面告濯 具 賓出 主人出 皆復外位 宗人視牲 告充 雍正作豕 宗人舉獸尾 告備 舉鼎 甞 請期 曰「羹飪」 告事畢 賓出 主人拜送

또 다른 이상의 예시는 『의례』 「特牲饋食禮(특생饋사례)」중 제사를 거행하는 날 기물의 진설과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의 원문 중 「의례수권」에 수록된 구절을 표시한 것이다. 각종 음식을 준비할 때 가마솔의 머리 부분이 서쪽을 향하도록 놓되 북쪽을 윗자리로 삼는다거나 물을 넣은 술동이를 술을 넣은 술동이의 서쪽에 두는 일, 두 개의 밥그릇 안에 찰기장 밥과 메기장 밥을 담아 진설할 때 그 아래에 가는 갈대를 깔아 받친다는 설명 등 기물들의 위치와 방향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절록하고 있지 않다.

4.1.3 『禮記手圈』의 절록 양상

『예기』는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성립된 문헌인 만큼, 각 편마다 서술 방식과 문체 및 논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박례경, 2004),²⁷⁾ 『예기수권』의 절록 양상 또한 통일된 규칙을 찾기 쉽지 않다. 정조 본인도 『예기』를 대상으로 한 비권 작업은 그다지 섬세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고,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예기수권』 역시 『주례수권』, 『의례수권』과 동일하게 정조 특유의 과감한 절록 방식이 나타나지 않고, ‘夫(부)’, ‘凡(범)’과 같은 발어사나 ‘是故(시고)’ 등의 접속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자를 소극적으로 생략하는 양상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외에는 『예기수권』 전권에 나타나는 절록 규칙은 발견할 수 없고, 대략의 절구 취사 기준이 『예기』의 각 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유형에 따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례』의 附記(부기) 성격을 지니는 『冠義(관의)』, 『昏義(혼의)』, 『鄉飲酒義(향음주의)』, 『射義(사의)』, 『燕義(연의)』, 『聘義(빙의)』편을 대상으로 한 절록은 각 의례의 절차별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의』편에서는 筮日(서일)과 筮賓(서빈) 절차에 대해 ‘冠事(관사)를 공경하기 때문이요, 관사를 공경한 것은 예를 중히 여겼기 때문이요, 예를 중히 한 것은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筮日筮賓, 所以敬冠事. 敬

冠事所以重禮, 重禮所以爲國本也.)’라고 설명한 구절을 절록하고, 『혼의』편에서는 親迎 과정 중 신부가 이르렀을 때 읍하여 들어오게 하고 牢를 함께 먹고 술 바가지를 합쳐 양치질 하는 절차에 대해 ‘몸을 합하여 준비를 같게 하는 뜻이니 친하게 하기 위함이다(所以合體同尊卑以親之也.)’라고 그 뜻을 설명한 구절을 절록하는 식이다.

둘째, 공자의 언급을 다수 절록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예와 관련된 일화 및 어록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단궁』, 『經解(경해)』, 『哀公問(애공문)』, 『仲尼燕居(중니연거)』, 『孔子閒居(공자한거)』, 『坊記(방기)』, 『雜記(잡기)』, 『表記(표기)』, 『緇衣(치의)』, 『儒行(유행)』, 『禮運(예운)』 등의 편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일화를 모아 엮었거나 애공과 공자의 문답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해당 편들의 성립 자체가 공자의 발언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기수권』에 공자의 언급이 다수 절록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정조는 이에 더하여 해당 편들 이외의 『예기』 각 편에서도 공자와 관련된 일화나 그의 언행을 대부분 취하고 있어, 『예기수권』 전체 분량의 약 5분의 1 가량이 공자의 발언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셋째, 『예기』 각 편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天子가 주체가 되는 내용이나 치국과 君臣(군신) 간의 예에 대한 내용을 다수 절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복에 대한 제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玉藻(옥조)』편에서는

27) 『예기』는 각 편의 내용 자체가 편명에 해당되는 일관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서로 교착되거나 중복되어 잡박하게 섞인 것이므로 각 편목을 분류하는 행위 자체가 엄밀하지 못한 탓에, 유향의 12류 분류 이래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 분류 범주를 세우고, 『예기』의 체재를 재편성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定論은 없다.

천자의 종묘 제사, 朝日(조일)과 聽朔(청삭), 卒食(졸식) 할 때의 복장, 흉년일 경우의 복장, 笏(홀)에 대한 규정 등을 절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종류의 가정윤리를 기록하고 있는 『內則(내칙)』편에서는 군주의 燕事(연사)에 사용되는 음식, 군주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법도 등을 절록하였으며, 1년을 12개의 달과 中央(중앙)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기후 변화와 별의 위치, 시행해야 하는 政令(정령)들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한 『月令(월령)』편에서는 각 달에 천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절록하고 있는 식이다. 이외 『예기』 각 편에서도 신하에 대한 군주의 상례 규정이나 천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의 규정, 천자가 사냥할 때의 규정 등 임금이 주체가 되었을 때의 예법과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신하와 백성들을 대할 때의 법도에 대해 다룬 내용을 다수 절록하고 있다.

4.2 『三禮手圈』의 절록 인용

『삼례수권』의 절록 구절들을 검토한 뒤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정조가 해당 구절들을 실제로 직접 인용한 사례가 다수라는 점

이다. 정조는 『예기』 『文王世子(문왕세자)』편에서 세자가 學宮(학궁)에서 신분의 上下(상하)가 아니라 年齒(연치)를 따지는 것을 통해 못사람들이 父子(부자)의 도리, 군신의 의리, 長幼(장유)의 예절 등 세 가지 善(선)을 알게 된다는 구절을 절록하여 『예기수권』에 수록하였는데, 이후 1800년에 세자의 책례를 논의할 때, 정조는 冊封(책봉)과 冠禮(관례), 嘉禮(가례)를 함께 행하기를 주장하며 해당 구절을 인용²⁸⁾ 하였던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의례』 『燕禮(연례)』의 ‘脢解于公(잉치우공)’ 절차 부분을 표제로 삼아 초계문신의 친시를 행하고서, 여러 문신들이 詩題(시제)를 해석하지 못하여 時限(시한) 내에 지어 내지 못하자 ‘초계문신의 거조가 놀랍다.’고 말하며 다음 날 다시 대령하게끔²⁹⁾ 하거나, 활쏘기에 대해 말할 때에는 공자가 覆相圃(확상포)에서 활쏘기를 하던 일에 대해 서술한 『예기』 『사의』편을 인용³⁰⁾ 하였으며, 山澤(산택)에서 나는 물건은 본래 조정에서 甸管(구관)하는 것임을 주장할 때에는 『주례』 『천관총재』편의 虞衡(우형) 관직을 인용³¹⁾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정조가 『삼례수권』에 절록된 구절을 인용한 사례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삼례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필수적인 예를 다루고

28) 朝鮮王朝實錄 正祖 24年 1月 1日 甲寅 4번째 기사

“今當元朝，日吉辰良，方欲下教，而所欲詢問于卿等者，冠禮嘉禮之與冊禮，一時併行甚好，文王世子篇所謂，行一物而三善皆得云者，雖以齒學一事而言，而今此三大典禮之一時併舉，足可以斷章取義，且其儀文之約而不煩，又合於乾坤易簡之道。”

29) 日省錄 正祖 18年 11月 18日 壬寅

“以擬周小臣請脢者致者爲表題限次對，諸文臣不知解題不卽趁限製進，教曰，抄啓文臣舉措駭然，今日親試勿施，更令明日待令，課講亦令明日待令。”

30) 日省錄 正祖 18年 2月 15日 癸酉

“鄉射非賤技，觀於覆圃之儀，聖人猶且好之。”

31) 朝鮮王朝實錄 正祖 21年 2月 29日 庚子 1번째 기사

“大抵山林川澤，古亦有虞衡之官，則山澤之產，固朝家之所甸管。”

있는 문헌이므로, 정조가 발언 중에 이를 자주 인용한 사실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해당 구절들이 대다수 『삼례수권』에도 절록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을 이 문헌이 초본이라는 점과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독 임금이 주체가 되는 내용이나 치국과 군신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다수 절록되었다는 점과 함께 연관지어 분석해보면, 『삼례수권』은 정조 본인이 곁에 두고 암송하여 체득하고자, 이를 정사에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로 편찬되었다고 추측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삼례수권』과 함께 『사부수권』에 속하는 『팔가수권』과 『양경수권』 역시 위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구절을 다수 절록하고 있어(유현정, 2021; 2022)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한다.

5. 결론

본고의 연구대상인 『삼례수권』은 『의례』, 『주례』, 『예기』의 삼례를 대상으로 1798년 6월 25일과 10월의 약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조가 직접 ‘비’, ‘권’, ‘교’ 단계를 거쳐 약 1,101여개의 구절들을 절록하여 엮은 정조 친찬 초본 중 하나이다. 이 문헌을 마지막으로 정조의 경·사·자·집 각 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틈틈이 진행된 초록 작업은 초본 『사부수권』으로 완성되었다.

정조의 문헌 편찬은 文治의 일부로써 해석되어 왔고, 다수의 선본 편찬은 요약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정조의 학문관으로부터 기인한 특수성으로 간주되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어 왔

다. 그 과정에서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초본 『사부수권』은 이전에 편찬된 선본 시리즈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원전 문헌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는 표면적인 면모를 근거로 하여 일종의 속편처럼 설명되거나, 혹은 선본을 다시 요약한 문헌으로 잘못 설명되는 등, 기왕의 관련 연구가 다소 세밀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편찬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한 뒤, 삼례에 대한 정조의 관점을 분석하여 정조가 초본 『사부수권』을 편찬한 목적이 선본 시리즈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제 절록 양상을 정리하여 『삼례수권』의 편찬 의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례수권』은 약 20일 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오자수권』의 편찬과 동시에 간헐적으로 편찬되었으며, 정조가 직접 비점과 권점을 치고 선별하였으며 초고를 보내주어 검토하기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인들과 논의하여 완성되었다. 특히 『예기수권』의 편찬은 비점과 권점이 한 번에 진행되어, 정조가 삼례 중에서 비교적 덜 중요시했던 『예기』의 절록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삼례수권』의 구성에 있어서는, 목차나 초록된 구절의 출처와 같은 정보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의례』, 『주례』, 『예기』세 문헌마다 강목 설정이 다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상례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구성은 정조가 『삼례수권』을 다수의 독자에게 예의 핵심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찬된 문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정조는 삼례에 대해 『의례』와 『주례』를 존송하였으며, 『예기』에 대해서는 앞의 두 문헌 ‘經(경)’에 대한 부차적인 ‘傳(전)’으로서 수용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관점은 주자가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한 뜻을 계승한 것이며, 특히 『주례』에 대해서는 주공이 남긴 문헌으로 간주하여 중요시하는 동시에 당시 『주례』를 경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기』를 부차적인 문헌으로 간주한 사실은 선본 『오경백편』에서 『예기』중 「악기」와 「대학」, 「중용」3편만을 수록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예기』가 오경에 편입되면서 학자들로부터 『의례』와 『주례』보다 우선시 되어온 삼례 성립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단지 주자를 존송하는 의미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절록 양상을 검토한 결과, 『사부수권』에 속하는 다른 문헌들과 달리 『삼례수권』에서는 정조 특유의 절록 방식이 나타나지 않고, 삼례 각 문헌마다 상이한 절록 규칙을 보인다. 「주례수권」에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序數(서수)와 附言(부언) 등을 일체 생략하고 있으며, 「의례수권」에서는 각 예의 아무리 사소한 절차라도 빠뜨리지 않고 절록하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각 예에서 인물의 위치나 배향, 기물의 위치와 방향 등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반면, 각 예의 절차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언사는 온전히 수록하고 있다. 「예기수권」에서는 발어사나 접속사,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자를 소극적으로 생략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각 편마다 서술 방식과 체제가 상이하여 「주례수권」이나 「의례수권」과 같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없다. 일부 취사

기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면, 『의례』의 附記(부기) 성격을 지니는 편에서는 각 의례의 절차별 의미를 주로 절록하였고, 공자의 언급을 다수 절록하였으며, 천자와 치국 관련 내용을 다수 절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조가 『삼례수권』에 절록된 구절들을 실제로 직접 인용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있는 점을 『삼례수권』의 편찬 과정과 구성 및 절록 양상, 그리고 『사부수권』이 필사본의 형태로 완성된 이후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종합하여 고찰해보면, 이 문헌이 이전의 선본 시리즈와 편찬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명제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없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오인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조의 선본 6종과 『사부수권』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초본의 특성을 활용하여 문헌 내적 분석을 통해 삼례에 대한 정조의 관점과 『사부수권』 편찬 의도를 추측한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원문 중심의 서지학적 연구 방법이 예학에 있어 정조의 사상과 행적을 이해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문헌의 편찬과 간행을 통해 한국학을 바라보는 담론 형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본고는 『삼례수권』의 편찬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정조의 어찰 등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편찬 및 간행 과정 정리와 현존 필사본 간의 교감 등 현존본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이에 해당 문헌이 포함된 『사부수권』 전체에 대한 종합 분석과 간행 관련 문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19).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書誌學研究, 78, 127-148.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출처: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각일력. 출처: https://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NGK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성록. 출처: https://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ILS
- 김민현 (2015).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容과 刊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 김인규 (2021). 조선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 서울: 다운샘.
- 박례경 (2005). 『禮記』의 體制와 禮論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 박례경 (2016). 鄭玄 禮學의 이론 구성적 성격: 정현 三禮學과 古禮의 재구성. 泰東古典研究, 36, 177-206.
- 四部手圈 (2002). 서울대학교 규장각.
- 유지신 (2010). 禮樂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小考. 유교문화연구, 17, 129-154.
- 윤정 (2007). 정조의 세자 책례(冊禮) 시행에 나타난 “군사(君師)” 이념. 人文論叢, 57, 271-298.
- 윤현정 (2015). 朝鮮朝 正祖親撰 『五經百篇』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현정 (2016). 『史記英選』의 編纂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68, 273-307.
- 윤현정 (2019).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현정 (2021). 正祖 親撰 『八家手圈』의 編纂에 관한 小考. 대동문화연구, 116, 79-120.
- 윤현정 (2022). 正祖 親撰 『兩京手圈』의 編纂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91, 203-226.
- 이세동 (2009). <<예기(禮記)>>의 <<오경(五經)>> 편입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 53, 5-26.
- 조동영 (2010).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회연구, 45, 11-39.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출처: <https://db.itkc.or.kr/>

• 국한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Dong-Young (2010). A study on the <Sabusugwon (四部手圈)> of King Jeongjo (正祖).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45, 11-39.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vailable: <http://db.itkc.or.kr>.
- Kang, Soon-Ae (2019). A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of Sabusugwon as recount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Chui-yo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78, 127-148.
- Kim, In-Gyu (2021). Reception of Zhouli and Theory of National Li in Joseon Dynasty. Seoul: Downsam.
- Kim, Min-Hyun (2015). A Study on the Accommodating and Publication of Yukseongongjuui in th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Graduate School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vailable: <https://kyudb.snu.ac.kr/>
- Lee, Se-Dong (2009). The process and meaning of Liji(禮記) included in Wujing(五經).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3, 5-26.
- Park, Rye-Gyong (2005). A Study on the Structure of 『Liji(禮記)』 and it's Theories of Li(禮). Doctoral dissertaion,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Park, Rye-Gyong (2016). Theory-constructing characteristics of Zheung Xuan's study of Li(Rites) - Zheung Xuan's study on the Three Classics of Li and reconstruction of Ancient Li.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36, 177-206.
- Sabusugwon (2002). Kyujangga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vailable: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Yoo, Ji-Shin (2010). A brief study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confucianistic rite music.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17, 129-154.
- Yoon, Hyun-Joung (2015).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Ogyeong-Baegpyeon Which Directly Edited by the King Jungjo of Choson Dynast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Yoon, Hyun-Joung (2016).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of the Sagi-youngse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8, 273-307.
- Yoon, Hyun-Joung (2019).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Anthology Directly Edited by King Jungjo of Chos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Yoon, Hyun-Joung (2021). A brief study on compilation of the Palga-Sugwon. *Journal of Eastern studies*, 116, 79-120.
- Yoon, Hyun-Joung (2022). A study on complication of the Yangyeongsugw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91, 203-226.

Yoon, Jeong (2007). Gunsu(Master King), mirrored in the Investiture ceremony held for the crown prince of King Jeongjo. *Journal of Humanites*, 57, 271-298.